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행정장비관리규칙이 당시 행정 장비의 희소성, 고가 장비의 중요성 등을 감안,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물품관리조례와는 별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비해 관리규칙은 현실과 맞지 않아, 행정장비관리는『성주군물품관리조례』및『성주군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으로 대체하고 규칙을 폐지함으로『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장된 사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제3조제2항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 구분에서 "9)행정장비 및 행정사무관리"를 삭제코자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3. 7.19 ~ 8. 7(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홈페이지 게재 및 군청, 읍면게시판 게시
○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5. 참고자료

가.『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나.『성주군행정장비관리규칙』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제9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① 〈 생 략 〉	제3조(실·과의 설치)① 〈현행과 같음〉
② 〈 생 략 〉	② 〈 현행과 같음 〉
1.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총 무 과	2. ----------
1) ~ 8) 〈 생 략 〉	1) ~ 8) 〈 현행과 같음 〉
9)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관리	**〈삭 제〉**
10) ~ 29) 〈 생 략 〉	10) ~ 29) 〈 현행과 같음 〉